

##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주민등록 사실 통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사실을 통보합니다.

인 감 신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여권번호		인감신고일	
	등록기준지			
	최종주소지			

※ 유의사항

1.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인감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등록기준지나 최종주소지 관할 증명청에 주민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인감대장 보유기관은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으로 신속히 인감대장을 이송합니다.
2. 등록기준지 관할 증명청은 인감신고인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을 정리합니다.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기 등록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끝.

발 신 명 의

작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